

의안번호	2212330
의 퇴 인	문진석의원
회 답 일	2025. 10. 24.
추계번호	25B4570
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1조(후유장애인의 재활 지원)	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부상자나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(이하 “재활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여 그 재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(이하 “재활사업”이라 한다)을 <u>수행하여야 함</u>(제1항) 1. 의료재활사업 및 그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. 직업재활사업(직업재활상담을 포함한다) 및 그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※ 자동차사고 부상자나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의 설치 및 재활사업 수행 의무화(현행은 재량사항으로 규정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1조(후유장애인의 재활 지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자동차사고 부상자·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의 설치 및 재활사업 수행 의무화(안 제31조제1항)
 - 현행법¹⁾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부상자·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규정을 두고 있음
 - 국토교통부는 현행법에 따라 의료재활시설로서 국립교통재활병원을 설치·운영하여 의료재활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, 직업재활시설은 별도로 설치·운영하고 있지 않으며, 직업재활사업도 별도로 수행하고 있지 않음

[표 1] 국립교통재활병원(의료재활시설) 개요

- 설립근거 :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 제31조(후유장애인 등의 재활지원)
- 설립목적 : 자동차사고 부상자나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인의 재활 지원
- 설립시기 및 설립비용 : 2014년, 총사업비 1,602억원*
*부지매입 178억원, 건축비 929억원, 의료장비 등 구입 495억원
- 위 치 :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260
- 규 모
 - 병원동(지하 1층, 지상 7층), 기숙사동(지상 6층), 재가적응훈련관(지상2층)
 - 대지 90,973.9㎡(27,520평), 건축연면적 43,011.62㎡(13,011평)
- 운영주체 : 국토교통부(서울대학교병원 위탁수행, '19. 10. ~ '29. 9.)

1) 제31조(후유장애인 등의 재활 지원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부상자나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(이하 “재활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여 그 재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(이하 “재활사업”이라 한다)을 수행할 수 있다.

1. 의료재활사업 및 그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2. 직업재활사업(직업재활상담을 포함한다) 및 그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○ 예산 현황					
(단위: 백만원)					
세부사업	내역사업	주요내용	'24	'25	'26(안)
국립교통재활병원	운영교부금	과견의료진 인건비 및 공공의료사업 수행	5,173	3,488	3,488
	시설장비	신규·노후장비 구매 및 시설유지보수 등	5,913	7,498	7,498
	재활연구	자동차사고 및 보험 등 정책연구 및 재활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임상연구 등	1,000	1,000	1,000

자료: 국토교통부

-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부상자·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사업을 수행 하도록 의무화할 경우,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·수행하고 있지 않은 직업재활시설의 설치 및 직업재활사업 수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직업재활시설의 건립 위치, 건물 및 인력의 규모, 운영 방식, 직업재활사업의 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,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 - 참고로 보건복지부가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등에 따라 수행 중인 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사업 현황은 [표 2]와 같음

[표 2] 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사업 현황

(단위: 백만원)			
사업명	사업 내용	2025	2026(안)
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(장애인직업재활 시설 기능보강)	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안전 및 편의 보장, 직업 재활 및 직업훈련에 필요한 인프라 제공	9,190	7,977
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	중증장애인에게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직 업능력을 향상하고 취업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, 사회참여 확대	20,352	21,435

자료: 보건복지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(Ⅱ-1)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최동완	김신애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동완	02-6788-3746	dongwaniii@nabo.go.kr